

202.69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 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법률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와, 행정명령 202.22호부터 202.26호, 202.32호, 202.33호, 202.34호, 202.35호, 202.44호, 202.45호, 202.53호, 202.57호에 포함된 후속 지침으로 대체되지 않은 모든 지침을 행정명령 202.64호에서 지속되고 포함된 바와 같이 다음을 제외하고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까지 30일간 더 지속합니다.

- 연례 안전 검사 및 최소한 2년마다의 배기가스 검사를 요구하는 범위까지의 차량 및 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제301항 부속조항 (a)는 2020년 11월 3일 자로 더이상 일시 중지 또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은 다음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까지의 기간 일시 중지 또는 개정합니다.

- 의사 및 공인 간호사가 간호사 또는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사람에게 비 환자 특정 처방을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혹은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목이나 코에서 코로나19 감염의심자로부터 샘플을 검사 목적으로 채취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감염의심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데 필수적인 범위에서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6909항 부속조항 4와 교육법(Education Law) 제6527항 부속조항 6,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8장 제64.7항에 대한 행정명령 202호의 수정은 타액 면봉 샘플 또한 포함하도록 수정됩니다.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에 의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재난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명령을 발행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까지 발행합니다.

-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행정명령 202.68호에서 설정한 제한을 준수하는 데 대한 극심한 후속 실패를 인식하여 예산처장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립 또는 사립 학교 또는 교육구 및/또는 지방정부에 전용된 2020 회계연도 예산(FY20 Enacted Budget)의 모든 기금을 해당 교육구, 학교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명령 202.68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 동안

또는 해당 교육구, 학교, 지방정부가 행정명령 202.68호에 따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명령을 위반한 기간 동안 보류할 권한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